



##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및 기술기준 시공지침

관련조항 : 기술기준 제21조

Q

-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아닌 일반건축물 옥내용 자가수용설비의 수배전반도 내진설계기준의 의무 설정 대상 시설인지?
-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이라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른 세부지침인 '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-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KECG 9701-2009'에 적합하도록 시공 시 상기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되는지?
- 내진성능인증업체의 수배전반만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?

A

1. 자가용수전설비도 변전소·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포함되므로 내진설계 대상 시설입니다.
2.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5항에 따른 세부지침인 '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'(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KECG 9701-2009)에 적합하도록 시공할 경우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등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3. 내진성능인증제품 등 제품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